

대행기관 협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한글		전화	
		영문		전송	
	대표자	한글		인터넷 홈페이지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한글			
		영문			
대행 받으려는 업무의 범위					
비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 영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49조에 따라 검사 등의 대행을 위한 협정 체결[]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임원의 성명 3. 선박검사원의 수 4. 정관 및 예산 5. 등록된 선박의 수 및 검사기준 6. 수수료의 기준 7. 검사 등 업무의 대행계획서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